

Md.e.5

Minor
장애인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 접근권 (3); 이규식 씨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1999년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4	29

장애인의 지하철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서울시지하철 입장(문서번호:운수500-4308)에 대하여

<대책위>

서울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실업자연대준비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연대모임

1. 지난 1999년 6월 28일 20:05분경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이규식씨(31, 뇌성마비1급)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인 지하철리프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차3주의 부상을 입고 국립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2.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지하철공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요구사항>

장애인의 지하철리프트 추락사고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 사건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에,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한다. 사나의 방법은 언론매체를 통하여(인간지 5단 동광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심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쿠터를 탄 뇌성마비 1급장애인인 이규식씨가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규정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았는가에 대하여 지하철공사는 분명히 대답을 주어야 한다. 이규식씨는 스쿠터보다 길이가 짧은 지하철 리프트를 타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데 심각한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규식씨는 리프트를 타기 위하여 스쿠터를 진입시키다가 뒷부분이 다 진입되지 않았고, 또다시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하다가 안전관을 지나서 앞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규식씨는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의 보장은커녕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규식씨가 이동해야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고, 사고 책임도 개인의 탓으로 돌려졌다.

지하철공사는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규격과 '국제표준규격'을 인준하면서 자신의 할 일은 다했다고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은 뒤로한채 무상영한대에 대한 유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지하철공사가 두려움실한 '유감'을 표명하기 이전에 이번 추락사고에 대한 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전동스쿠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역무원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을 아쉬게 생각합니다."라는 지하철공사의 입장에 대하여...

<요구사항>

장애인이 역무원의 안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지하철공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분명한 지하철역의 사파와 지하철 이용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지하철 리프트나 이동시설이 전무인 지하철 역에는 이동을 책임질 전담역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유>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역무원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이 하이에 별파기 보나 힘들다는 것을 안다. 혜화역에서 사고가 난 후에 다음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노들야막 학생과 교사가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방향으로 역무원호출버튼을 눌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역무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지하철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간은 금이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장애인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라 역무원을 마냥 기다리며 그냥 길거리에 시간을 내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실제로 역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 오히려 바쁜 역무원을 불러놓고도 장애인들은 죄인처럼,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동을 부탁하게 된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며, 그 이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이다.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자선'의 형태로는 안된다. 이에,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질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 규정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의한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이상, 길이 1.0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1.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에 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해졌는가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3-2. 이 규정이 스쿠터를 탄 장애인이 안전한가 밝혀야 한다.

3-3. 안전하지 않다면 스쿠터를 탄 장애인에 대한 경고문고라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4. '안전판'의 역할은 무엇인가?

3-4.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스쿠터를 탄 장애인의 이동대책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사건개요

- 일시 : 1999년 6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 장소 : 4호선 혜화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설치 계단(마로니에공원 방향 2번출구)
- 피해자 : 이름 : 이규식(31세, 뇌성마비 1급)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속 : 노들장애인야학 초등학교 과정
결혼 : 미혼

□ 사고경위 :

피해자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이다. 이동을 위해 스쿠터(전동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피해자는 스쿠터를 타고 99년 6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장애인 친구 1명과 혜화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혜화역 2번 출구의 첫 번째 리프트를 내려간 후 매표소를 지나고 두 번째 리프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리프트를 펼치고 스쿠터를 리프트 위에 올라가던 중 리프트 공사가 스쿠터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공간에 스쿠터를 맞추기 위하여 조작하던 중 리프트 앞쪽에 있는 허술한 안전판을 넘어가 앞쪽 계단으로 1/3지점까지 스쿠터와 함께 굴러떨어졌다. 사고후에 역무원들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19로 동대문의 이화여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국립재활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 목격자 진술을 근거한 지하철 담당자 주장 :

- 리프트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쿠터를 리프트에 올리려다가 본인의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역무담당자들은 사고 현장에 없었으며, 목격자를 통하여 사고 당시의 진술을 받아놓았다. 사고 발생후 119를 불러서 병원에 후송조치 하였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사고 직후 오후 11시쯤 야학교시 6명이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역무원을 통해 사고 경위를 듣고, 목격자 진술서를 보았음.)

□ 사고 발생 원인

- 지하철 역 담당자들은 장애인본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다.
- 혜화역에 있는 리프트 자체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안전판 및 크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리프트에서 휠체어 전진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2. 리프트 자체의 크기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에겐 위협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쿠터가 리프트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
 3. 피해자는 좁은 리프트에 스쿠터를 올리려고 조작하던 중에 앞쪽으로 스쿠터가 쏠리면서 떨어지게 되었다.

□ 피해자 상황

- 사고 직후 119에 수송되어 동대문 이화여대병원 응급실에 1차 가료를 받은 후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목이 부어서 기부스를 한 후 머리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 현재 국립의료원에 입원 중(626호)

<노들장애인야학의 상황일지>

- 1999년 6월 29일 :

노들장애인야학 내 이규식학생의 사고에 대한 대책위 구성

- 1999년 6월 30일 :

야학교장, 교사 3명, 학생 1명 등 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오후 3시 혜화역장 방문

김용기 혜화역장은 스쿠터조작 미숙으로 이규식씨의 개인적 잘못을 주장함.

야학에서는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공공교통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근본적인 책임을 전달함.

이번 사고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공식적 입장을 공문으로 요구.

<야학의 요구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편의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 1997.4.10, 법률 제533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노들장애인야학의 주장 >

-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뇌성마비1급의 중증장애인 이규식씨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의 꺾여 이리프트로 이동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 스쿠터로 리프트를 이용하기에 너무 협소하다.

- 리프트에 바퀴의 우발적인 전진을 막기 위해 설치되어있는 안전판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서울시 및 지하철공사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하는 그 의무를 방기하였다.

노들장애인가간학교

Nodl Disabled Peoples' Education Institute

서울시 평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구관3층(우 143-200), TEL.446-9101, E-mail : nodle@att.co.kr

수 신 인권운동사랑방
 참 조 담당자
 제 목 「목숨을 건 지하철의 리프트 곡예, 중증장애인은 갈 곳 없다」
 날 짜 99. 6. 29
 담 당 박경석(011-751-0835)
 분 량 총 2 매 (표지포함)

보도자료

목숨을 건 지하철의 리프트 곡예, 중증장애인은 갈 곳 없다

1. 바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노들장애인가간학교는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하여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하는 장애인가간학교입니다.
3. 님아님, 노들장애인가간학교의 학생 이규식(31세, 뇌성마비1급)씨가 99년 6월 28일, 오후8시 30분경 4호선 혜화지하철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타던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스쿠터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과 머리에 상해를 입고 지금 국립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4. 혜화역 담당자들은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치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인의 실수이기 이전에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나를 보여줍니다. 리프트에 오를 때 휠체어가 구르지 않도록 안전판이 설치되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스쿠터로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하철의 리프트는 안심하고 이동하기에 턱없이 부적합한 것이었습니다.
5. 이렇게 허술한 휠체어 리프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중증장애인이 계속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또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실수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다가오는 '예견된 사고'입니다.
6.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지하철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서울시는 피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중증장애인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사건개요

- 일시 : 1999년 6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 장소 : 4호선 혜화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설치 계단(마로니에공원 방향 2번출구)
- 피해자 : 이름 : 이규식(31세, 뇌성마비 1급)
주소 : 서울시 쌍진구 구의동
소속 : 노들장애인야학 초등학교 과정
결혼 : 미혼

 사고경위 :

피해자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이다. 이동을 위해 스쿠터(전동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피해자는 스쿠터를 타고 99년 6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장애인 친구 1명과 혜화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혜화역 2번 출구의 첫 번째 리프트를 내려간 후 매표소를 지나고 두 번째 리프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리프트를 편치고 스쿠터를 리프트 위에 올라가던 중 리프트 공간이 스쿠터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공간에 스쿠터를 맞추기 위하여 조작하던 중 리프트 앞쪽에 있는 허술한 안전판을 넘어가 앞쪽 계단으로 1/3지점까지 스쿠터와 함께 굴러떨어졌다. 사고후에 역무원들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19로 동대문의 이화여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국립재활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목격자 진술을 근거한 지하철 담당자 주장 :

- 리프트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쿠터를 리프트에 올리려다가 본인의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역무담당자들은 사고 현장에 없었으며, 목격자를 통하여 사고 당시의 진술을 받아놓았다. 사고 발생후 119를 불러서 병원에 후송조치 하였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사고 직후 오후 11시쯤 야학 교사 6명이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역부원을 통해 사고 경위를 듣고, 목격자 진술서를 보았음.)

 사고 발생 원인

- 지하철 역 담당자들은 장애인본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다.
- 혜화역에 있는 리프트 자체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안전판 및 크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리프트에서 휠체어 전진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전혀 무용시물이었다.
 2. 리프트 자체의 크기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쿠터가 리프트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
 3. 피해자는 좁은 리프트에 스쿠터를 올리려고 조작하던 중에 앞으로 스쿠터가 쏠리면서 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 상황

- 사고 직후 119에 수송되어 동대문 이화여대병원 응급실에 1차 가료를 받은 후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목이 부어서 기루스를 한 후 머리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 현재 국립의료원에 입원 수속중, 자세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우 143-200), TEL : 446-9101, H.P : 011-793-9101

수 신 인권운동사랑방
참 조 박래군 사무국장
제 목 천호역 휠체어리프트 고장에 대응한 성명서 및 연대제안
날 짜 99. 10. 7
담 당 박경석(011-793-9101)
분 량 총 2 매 (표지포함)

성명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의 이동권리가 또 위협받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0월 4일, 오후 6시경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 이흥호(29, 뇌성마비1급)씨가 공부하러 야학에 가고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탄 이흥호씨는 천호역에서 지하철을 타기위하여 휠체어리프트로 계단을 내려갔다. 이흥호씨는 5호선 방화방면 2번 리프트에서 1/3쯤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뚜'하는 소리와 함께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옆에 있던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에 의하여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사고는 휠체어리프트가 계단의 1/3 지점에서 일어났다. 휠체어리프트를 받쳐주는 레일에서 하중에 의하여 용접부분이 떨어져 나가 리프트가 기울어지면 일어난 사고이다.

지난 6월 28일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씨의 혜화역에서의 추락사고, 수없이 발생하는 휠체어리프트 고장과 그리고 천호역 사고를 바라보면서 과연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사고는 분명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고이다. 또한 이것은 단지 천호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내 지하철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장애인들은 항상 그 위험성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동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지하철에서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을 보장하기에 부적합함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에게 가장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은 승강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지하철 관계기관은 구조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승강기 대신에 위험하고 불편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도 계속되는 사고와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수는 없다.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들도 서울시의 시민이며 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천호역의 휠체어리프트의 사고에 대하여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하라.

하나,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의 지하철역에 승강기 대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라.

하나,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휠체어리프트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라.

하나,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1999년 10월 7일

노들장애인가간학교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연대제안

1. 이에 장애인노들야간학교(교장 박경석)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이계준)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10월 7일 (목) 오후 2시 지하철 천호역 5호선과 8호선 환승장 김포방향 계단 앞에서 형의집회를 가집니다. 귀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 추후 지하철 역에서의 휠체어리프트 계획을 승강기로 바꾸기 위한 정책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귀 단체와의 연대를 제안합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서관 2층 (우 143-200), TEL : 446-9101, H.P : 011-793-9101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담당자
제 목 「서울시에 대한 혜화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 책임 손해배상 재판일」
날 짜 99. 10. 12
담 당 박경석(011-793-9101)
분 량 총 7 매 (표지포함)

보 도 자 료

장애인의 안전한 편리한 이동권을 방치한 서울시·서울시지하철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10월14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민사법정 452호 재판 확정

지난 99년 6월 28일 20:05분경에 발생한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이규식(31, 뇌성마비1급)씨의 지하철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여 재판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당한 사건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추락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그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편의시설촉구시민연대 4개단체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 임영화 변호사(전화: 593-2960)를 통하여 접수하였습니다.

1. 소장접수 일시 : 1999년 8월 2일
2. 피고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장, 서울특별시
3. 손해배상 금액 : 금 32,028,530원
4. 접수처 :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5. 1차 재판일 : 1999년 10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민사법정 452호

- 첨부자료 : 1. 소장
2. 사건개요
3. 성명서. 끝.

11/14/99 11:42:59 서울지법

소 장

원고 이규식

서울 광진구 [REDACTED]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 가성빌딩 4층 우편번호 : 137-070

피고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7

공사장 손 장 호

2. 서울특별시장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규식에게 금 32,028,5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6.28.부터 이 사건 소장송 달일까지는 연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시자관계

원고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보행이 불가능하여 평소 이동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편의시설을 포함한 시설물의 귀속자인 소유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1999.6.28. 20:05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 지하철호선 해화전철역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에 승차하고자 접혀져 있던 휠체어리프트를 피고 전동휠체어블 리프트바닥에 올려 놓으려던 중 전동휠체어 바퀴가 리프트바닥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전복되어 계단을 굴러 내려가 전치 3주간 및 추적관찰을 요하는 뇌좌상 및 경추부 영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피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이건 사고원인인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모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시설주' 이고, 특히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시설주관기관' 이기도 합니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접근권)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는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동법 제7조(대상시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는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대상시설)는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1은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로서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비. 교통시설 (3)도시철도역사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는 대상시설별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장애인의 동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다)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피고들은 이 상건 장소인 지하철 4호선 혜화전철역 입구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휠체어리프트 운행도중 휠체어 또는 그 안에 탑승한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에서 이탈하여 계단으로 전복되거나 굴러 넘어지지 않도록 휠체어리프트에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대 또는 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단순히 휠체어리프트의 상하이동식 운동도중 휠체어의 유동(流動)으로 인한 접촉시 자력으로 운행정지가 되도록 하는 감지장치인 안전판만을 설치한 과실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원고로 하여금 휠체어리프트 밖으로 이탈하여 굴러 넘어져 피해를 당하게 하는 등 이건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기초자료

생년월일 : 1969. 8. 5생(29세 10개월)

성별 : 남자

기대여명 : 42.43년

(2) 원고 이규식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1급장애인으로서 기왕증을 감안하여 일실수익금은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나. 치료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하며 자비로 금2,028,5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합니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장애인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및 '장애인등의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상해의 피해까지 입는 바람에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최소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용 3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32,028,530원(치료비 2,028,530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6.2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이율인 연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저이 연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일시 : 1999년 6월 28일, 오후 8시 05분경
- 장소 : 4호선 혜화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설치 계단(마로니에공원 방향 2번출구)
- 피해자 : 이름 : 이규식(31세, 뇌성마비 1급)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속 : 노들장애인야학 초등학교 과정
결혼 : 미혼

□ 사고경위 :

피해자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이다. 이동을 위해 스쿠터(전동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피해자는 스쿠터를 타고 99년 6월 28일 오후 8시 5분경 장애인 친구 1명과 혜화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혜화역 2번 출구의 첫 번째 리프트를 내려간 후, 매표소를 지나고 두 번째 리프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리프트를 펼치고 스쿠터를 리프트 위에 올라가던 중 리프트 공간이 스쿠터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공간에 스쿠터를 맞추기 위하여 조작하던 중 리프트 앞쪽에 있는 허술한 안전판을 넘어가 앞쪽 계단으로 1/3지점까지 스쿠터와 함께 굴러떨어졌다. 사고 후에 역무원들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19로 동대문의 이화여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국립재활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 목격자 진술을 근거한 지하철 담당자 주장 :

- 리프트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쿠터를 리프트에 올리려다가 본인의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역무담당자들은 사고 현장에 없었으며, 목격자를 통하여 사고 당시의 진술을 받아놓았다. 사고 발생후 119를 불러서 병원에 후송조치 하였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사고 직후 오후 11시쯤 야학교사 6명이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역무위를 통해 사고 경위를 듣고, 목격자 진술서를 보았음.)

□ 사고 발생 원인

- 지하철 역 담당자들은 장애인본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다.
- 혜화역에 있는 리프트 자체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안전판 및 크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리프트에서 휠체어 전진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2. 리프트 자체의 크기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쿠터가 리프트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
 3. 피해자는 좁은 리프트에 스쿠터를 올리려고 조작하던 중에 앞쪽으로 스쿠터가 쏠리면서 떨어지게 되었다.

□ 피해자 상황

- 사고 직후 119에 수송되어 동대문 이화여대병원 응급실에 1차 가료를 받은 후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목이 부어서 기부스를 한 후 머리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 국립의료원에 입원 3주진단

〈성명서〉

목숨 건 지하철의 리프트 곡예, 창살없는 사회감옥 장애인은 갈 곳 없다.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처참히 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05분경,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 이규식씨(31세, 뇌성마비1급)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던 중 계단으로 떨어져 뇌와 경추(목)에 상해를 입었다.

이규식씨는 밤에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로 인하여 배우지 못한 공부를 했고, 낮에는 직장을 구하려고 스쿠터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혜화역에서 사고를 당했다.

장애인이 노동, 교육 그리고 이동에 차별받는 현실이 이 사고를 통하여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지 못했고,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열심히 인간답게 살아보려 노력한 이규식씨가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없는 사회 현실에서 급기야는 '예견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인 이규식씨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사고 후 후송조치를 충실히 했다는 것과 치료비 정도를 운운하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지하철공사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뇌성마비 1급으로 중증장애인인 이규식씨는 스쿠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의 스스로 이동할 수 보장구이다. 하지만, 스쿠터로 지하철 리프트를 타기에는 원천적으로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스쿠터는 지하철 리프트보다 약간 크다. 안전하게 리프트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앞바퀴가 약간 리프트를 지나쳤다. 그런데 앞바퀴의 우발적인 진행을 막아줄 안전판은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했고, 스쿠터와 함께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테 과연 지하철공사는 계속 장애인 본인 잘못이라 우길 수 있는가? 스쿠터에 몸을 의지해 스스로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은 계속 목숨을 담보한 위험한 곡예를 감수해야 하는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거대한 창살없는 감옥에 장애인을 가두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이 집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수용시설에서 지내야만 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야만적인 인간차별인 것이다.

그 누구도 장애인에게 이동의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 그 누가 장애인을 창살없는 거대한 사회감옥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았는가. 이 사회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 책임은 분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공공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장애인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책임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있다.

이에 우리는 이규식씨의 '예견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엄중히 묻는 바이다. 또한, 공공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장애인의 지하철 예화역 추락 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규명하라!
-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번 '예견된 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사고당한 이규식씨에 대한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
-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장애인이 지하철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노/들/장/에/인/야/간/학/교

노/들/장/에/인/야/간/학/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우 143-200), TEL : 446-9101, H.P : 011-793-9101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담당자
제 목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다.
지하철리프트의 잦은 고장을 고발한다.
날 짜 99. 9. 27
담 당 박경석(011-793-9101)
분 량 총 3 매 (표지포함)

보 도 자 료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다.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을 고발한다!

**지하철의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 발생한 스쿠터를 탄 뇌성마비1급 장애인 이규식의 4호선 혜화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서 보듯이 지금의 휠체어리프트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시하철공사는 이규식씨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장애인 자신의 과실로 치부했다

지하철의 휠체어리프트는 전동스쿠터보다 약간 작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의 휠체어리프트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에게도 분명히 이동할 권리가 있다. 이규식씨는 전동스쿠터보다 조금 작은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비싼 관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동스쿠터로 자신의 모든 이동과 자립생활을 영위한다. 뇌성마비1급인 중증장애인 이규식씨의 이동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신의 운명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휠체어리프트는 전혀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동기구로 부적합하다. 그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6
10/20/11/01
11/25/11/01/01

침해하는 인권침해인 것이다.

비장애인은 2분, 장애인은 15분, 더 이상 지하철의 휠체어리프트를 타지 못하겠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나는 혜화역에서 아차산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한다.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휠체어리프트를 2번 타야한다. 입구에서 1번, 개찰구를 지나 또 지하철이 서는 곳까지 1번. 그렇게 타고 내려가면 시간이 대략 15분이 소요된다. 나는 무척 화가 난다. 과연 리프트도 없는 지하철역도 있는데 리프트라도 있으니 감사해야할 일인가. 보통사람이 1,2분이면 충분한 시간을 나는 15분을 걸려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시간은 금이다'라며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인데, 나의 시간은 장애인의 시간은 똥인가.

더욱더 알 수 없는 것은 혜화역에 리프트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혜화역 자체에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예산 때문에 돈이 적게드는 리프트를 설치했는지. 답을 모르겠다. 건물구조상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리프트를 부득이 설치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라면 내가, 수많은 장애인들이 평생을 이동하기 위하여 길에서 버려야 할 시간과 위험성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왜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지하철의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 더 이상 리프트를 타지 못하겠다.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잦은 고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나는 아차산역까지 가기 위해 혜화역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99년 9월 22일 오후 5시이다. 동대문운동장에 내려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탔다. 그런데 리프트는 조금 움직이다 계단 중간에서 고장이 나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려 15분 가까이를 그 곳에서 쫄쫄내다가 결국에는 승무원들이 휠체어 채로 들어 올려서 올라올 수 있었다. *한번은 15분, 이젠 15분*

얼마 전 우리 아학의 학생 한 명도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옆에 있던 교사들이 들어서 올린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지하철이 끝난 시간이 되어서 더욱 초조하고 급하게 움직였다. 동대문운동장의 환승장에 있는 리프트는 고장도 자주 난다. 고장 날 때마다 겪어야 할 고생과 시간의 낭비, 그것은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그 또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할 운명의 장난인가.

이제는 싫다. 장애인의 시간도 금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에서 작은 실천과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혜화역에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더 이상 이동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나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버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의 이동권을 서울시는 보장하라!

강박관념 심으로 이러한 경험의 보람은 장기간의 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음

누를 경우 (1) 휠체어를 내리자마자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문제가 생기면 (1)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2)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3)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4)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5)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6)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7)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8)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9)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10) 장애인에게 물어보라

-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동대문운동장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는 혜화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밝혀라!
- 우리는 더 이상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금'같은 시간을 길거리에 버릴 수 없다. 혜화역에 엘리베이터를 즉각 설치하라!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대한 답변 요구사항>

1.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먼저 4호선 동대문운동장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에 대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장애인들에게 장애관련신문에 광고로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와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2. 혜화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혜화역에 엘리베이터설치를 하지 않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혜화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 혜화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에는 시간의 낭비와 더불어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혜화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설치계획이 있으며, 없다면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